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2024. 9. 10(화) 10:00

제251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환경국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보고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563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8. 22.
- 라. 회부일자 : 2024. 8. 22.

2. 제안이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경예산안 편성규모 (총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최종예산 789,787,243천원(일반 759,558,746천원 특별 30,228,497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2회추경 (안)
			소계	당초예산	간주처리	1회추경	
계		789,787,243	750,512,371	734,975,982	14,011,345	1,525,044	39,274,872
일반회계		759,558,746	722,526,075	709,512,686	11,488,345	1,525,044	37,032,671
특별회계		30,228,497	27,986,296	25,463,296	2,523,000	0	2,242,201
	의료급여기금	668,532	585,000	585,000	0	0	83,532
	주차장	29,559,965	27,401,296	24,878,296	2,523,000	0	2,158,669

4. 문화환경국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2회추경(안)	증감율 (%)
문화환경국		75,702,328	75,223,237	479,091	0.64 %
문화체육과		27,501,637	27,145,423	356,214	1.31 %
청소행정과		45,414,736	45,294,962	119,774	0.26 %
환경과		2,304,892	2,277,664	27,228	1.20 %
부동산정보과		481,063	505,188	△24,125	△4.78 %

5.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최종예산 (①+②)	기정액 (①)	2회 추경(안) ②
문화체육과				
금빛공원 열린 광장 내 맑은누리 작은도서관 조성	시흥1동 맑은누리작은도서관 이전 및 조성 공사비	111,784	0	111,784
구민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제로웨이스트 행사·축제 운영을 위한 다회용기 구입비	279,150	271,150	8,000
금천구청 탁구단 응원 서포터즈 운영	2024 프로(내셔널)탁구 리그 경기일정 취소에 따른 감추경	0	14,510	△14,510
금천구민문화 체육센터 운영 및 환경개선	셔틀버스 임차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예산 반영	3,191,331	3,158,331	33,000
금빛휘트니스 센터 운영	내부 인테리어 공사로 재개관이 불가하여 공단 전출금 감추경	53,821	222,312	△168,491
청소행정과				
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후 잔액 및 2023년 반입량 관리제 목표 달성, 폐기물처리비 지원에 따른 감추경	6,302,434	6,342,565	△40,131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폐목재 처리방식이 매각협약으로 변경됨에 따른 감추경	0	49,680	△49,680
재활용 처리장 유지관리	미사용 구조물 철거, 소음억제를 위한 바닥침목 및 위생배관 설치	50,000	20,000	30,000

6. 검토의견

○ 문화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은 기정예산(752억 2,323만원)에서
금회 4억 7,909만원이 증액된 총 757억 232만원이며,
구 전체 예산 총액 대비 9.59%에 해당됨.

○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가. 문화체육과

기정예산(271억 4,542만원)에서 금회 3억 5,621만원 증액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시흥1동 작은도서관 조성 1억 1,178만원 증액

구민한마음체육대회 800만원 증액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셔틀버스 임차비 3,300만원 증액

나. 청소행정과

기정예산(452억 9,496만원)에서 금회 1억 1,977만원 증액편성

주요 편성 내용으로

폐기물처리 부과금 4,013만원 감액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4,968만원 감액

재활용처리장 시설물 환경개선 3,000만원 증액

○ 문화환경국의 추경예산은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변경 사항 및 매칭 비율에 따른 구비를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편성과 내역 등이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45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전문개정 2011.8.4.]